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에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제5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4장 민원,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 구축

제6조(민원,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1. 민원 접수: 금융소비자는 회사의 관련 담당자나 담당부서는 물론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민원 접수 가능
 - 민원접수처 이메일: lsm38@pisinsu.com
 2. 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민원인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절차 진행: 민원인과 확인 [이름, 연락처(전화, 이메일등), 동의서, 원하는 회신방법 등 확인]
 3.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 민원인과 확인 후 회사의 관련 임직원 및 부서등과 사실관계 확인
 4. 회사 내부절차에 따른 민원내용의 검토 및 조치사항의 결정
 5. 회사 검토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에 안내
 6. 필요시 추가 업무처리 진행 및 안내
 7. 종결 및 기록 보관

제7조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

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 정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민원, 분쟁 대응 관련 교육, 훈련

제10조(임직원 교육, 훈련)

-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분쟁

대응업무처리 절차 및 민원분쟁 전산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 및 필요 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 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개정)

① 관련 법령 제 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의 제정, 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기준의 제정, 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변경한 경우 제정·변경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